

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의원입법발의 보고

'09.5.11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도시가스공급을 요청할 경우 거절할 수 없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. 이에 우리협회를 비롯한 LPG업계는 해당 의원실 항의방문 및 관련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했다.

한국LPG가스공업협회

□ 발 의 자

13인 (한나라당 *주성영의원 대표발의, '09.5.11)

*58년생, 경북 울진생, 법사위, 17·18대의원, 대구 동구갑)

□ 제안 이유

- 도심외곽 및 농어촌지역의 상당수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LNG가 공급되지 않아, 가격이 LNG대비 2배가량 비싼 LPG사용중
- 저소득계층 및 일정규모 이상의 도심외곽 및 농어촌지역의 경우, 도시가스공급을 법률로 강제하여 저소득층과의 양극화 완화

□ 주요 내용

-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가스공급을 요청할 경우 아래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음을 법률로 강제 : 도법 제19조의3(가스공급기준 등) 제1항 신설
 - ① 신청가구가 공급관 연장 100m당 20가구 미만인 경우
 - ② 특수지형으로 공급시설 설치에 기술적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
 - ③ 지역 여건상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
 - ④ 타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해 가스공급시설 공사가 제한된 경우

※현행 :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가스의 공급거절 및 공급중단할 수 없음(도법 제19조 공급의무)
- ② 상기 ①의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총수가 동시에 신청을 하는 가구총수의 1/2를 초과하는 경우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음 : 도법 제19조의3(가스공급기준 등) 제2항 신설
- ③ ②의 경우에 따라 가스공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용자 할 수 있음 : 도법 제19조의4(보조 및 용자) 신설
- ④ ①, ②를 위반하여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: 도법 제51조(벌칙) 6의2 신설